

감 사 위 원 회

주 의 요 구

제 목 수영장 보험가입 부적정

관 계 기 관 관광체육국, 기후환경본부, 체육시설관리사업소

내 용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〔별표 1의2〕‘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’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(보험가입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(보험가입)에 따르면,

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「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(1인당 보장금액 1.5억원)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, 잠실1수영장 등 4개 수영장은 영조물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1인당 보장금액을 관련법에서 규정한 보장금액 이하로 보험에 가입하였다

〔표 1〕 보험가입 부적정 시설현황

연번	시설명	관리부서(수탁기관)	가입보험 (가입기간)	1인당 보장금액
1	잠실1수영장	체육시설관리사업소(직영)	영조물손해배상보험 (‘18.1.1~12.31.)	0.5억원
2	잠실2수영장	체육시설관리사업소(◆◆◆◆◆)	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(‘18.7.7.~’19.7.7.)	1억원
3	고척체육센터 수영장	체육정책과(▽▽▽▽▽▽▽▽)	영조물손해배상보험 (‘18.1.1~12.31.)	1억원
4	강남주민편익시설 수영장	자원순환과(♠♠♠)	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(‘18.1.31.~’19.1.31.)	1억원

조치할 사항

관광체육국장(체육정책과장), 기후환경본부장(자원순환과장),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
향후 체육시설 보험가입 시 관련법에서 규정한 보장금액 이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
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요구)